

대학 자체평가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,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, 대학발전 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제5조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평가시기) 자체평가의 시기는 2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평가주관부서) ① 대학자체평가의 총괄적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처에서 담당한다.

제8조(대학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 자체평가 기획·연구·수행
2. 대학 인증평가 기획·연구·수행
3. 대학 특성화 기획·연구·수행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실무팀)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11조(평가계획 수립) 기획조정처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.

제12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기획조정처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.

제13조(평가실시) ① 기획조정처에서는 평가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4조(실사)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서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이의신청) 기획조정처장은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보하고, 행정부서 및 학과의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,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.

제16조(평가결과 보고)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제17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평가결과는 계열별(인문사회, 예능, 체능)로 또는 교육단위별로 발

표하며, 교내 언론매체,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한다.

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열별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자체평가의 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, 교육단위 및 행정부서 구조조정, 대학 및 대학원 정원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8조(기타)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